

Orange 지역 특수교육 계획

Orange 통합 교육구

학부모/후견인/대리부모께 드리는 통보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통보

본 통보는 학부모, 법적 후견인, 대리부모 또는 법원이 임명한 교육결정권자인 귀하에게 귀하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배정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제공되었습니다. 본 안내사항은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이하 “IDEA”))에 따라 반드시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의 통보(이하 “통보”)입니다. 연방법인 IDEA 는 교육구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유자격 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립교육” (FAPE)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통보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18 세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본 통보의 취지는 연방 및 주법 아래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지는 권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출생부터 스물 두번째 (22 번째) 생일까지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이 제공됩니다. 귀하와 귀하 자녀는 특수교육 배치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파악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연방 및 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IEP 의 개발을 포함한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립 및 비 공립 프로그램 내 제공 가능한 FAPE 이나 기타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통보의 사본은 학년도 당 한번 제공될 것입니다. 단, (1)첫 의뢰 시 또는 귀하의 평가 요청 시; (2) 학년도 내주정부 진정서 또는 적법절차에 따른 진정서의 첫 접수 후; (3) 처벌적인 배치 변경이 요구되는 결정이 내려졌을 시; 또는 (4) 귀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통보를 귀하의 모국어/주 언어 또는 기타 소통 방식으로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국어/주 언어 또는 기타

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닐 경우, 본 통보의 번역을 구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본 통보의 사본은 Orange 통합 교육구의 홈페이지인 www.orangeusd.org.3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권리에 대한 통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20 U.S.C. 제 1415 조(d)항; 34 C.F.R. 제 300.29 및 300.504 조; 교육법 제 56021.1 조(a),
56301(d)(2), 56321(b), 및 56506(a).)

정의

장애아동은 특별한 필요/요구를 가진 개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연방 및 주법이
규정하는 지능장애, 청각장애 (난청 포함), 스피치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실명 포함),
정서적 어려움, 정형외과적 손상, 자폐증, 외상적 뇌 장애 또는 기타 건강장애, 특정
학습장애, 농맹증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이상의 이유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0 U.S.C. 제 1402 조(3)항; 34 C.F.R. 제 300.8 조; 교육법 제 56026 조; 5 캘리포니아
규정집 (CCR) 제 3030 조.)

평가란 연방 및 주법에 따른 여러가지 검사와 방법을 통한 귀하 자녀에 대한 평가로서
자녀의 장애 여부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심사를 뜻합니다. 평가도구는 각 자녀마다 개별적으로 선정되며 교육구의 직원
또는 계약아래 고용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훈련이 된 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학교환경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4 C.F.R. 제 300.15, 300.304 – 300.311 조; 교육법 제 56302.5 and 56320 조.)

개별화 교육 계획 (IEP)이란 귀 자녀의 IEP 팀이 개발한 최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뜻합니다.

(1)학업 성취 및 기능적 수행 능력 수준을 명시 (2)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 (3)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아동의 진척사항에 대한 측정 방법과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아동의 실제 진척에 대한 주기적인 경과 보고서 제공 시기의 명시 (4) 아동에게 제공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추가 지원 및 서비스 목록 (5) 아동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 (6) 주 및 교육구 전체 평가 시행 시 아동의 학업 성취와 기능적 수행능력 측정에 필요한 개별적 적절 편의제공 목록 그리고 (7) IEP에 포함된 프로그램, 서비스의 실시 예상일 및 예상 기간, 빈도 그리고 제공장소 및 변경사항의 명시

(20 U.S.C. 제 1414(d)항; 34 C.F.R. 제 300.22, 300.320-300.324 조; 교육법 제 56345 조.)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FAPE)은 (1)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어 공공의 감독과 지휘 아래 무료로 제공되며 (2)캘리포니아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고 (3) 귀하 자녀가 교육 혜택 수혜를 위해 개발된 IEP 계획서에 따라 제공되며 (4) 주 내에 있는 적합한 프리스쿨,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나 해당 교육구내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비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20 U.S.C. 제 1402 조(9)항; 34 C.F.R.제 300.17 조; 교육법 56040 조.)

최저 제한 환경(LRE)이란 장애아동이 적합한 선 내에서 비장애아동과 최대한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때문에 추가지원과 서비스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실내 학습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게 될 때에만 특수교실, 분리 교육 또는 기타 형태로 장애아동을 일반 교육환경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20 U.S.C. 제 1412(a)(5)항; 34 C.F.R. 제 300.114 조; 교육법 제 56040.1 조.)

관련 서비스란 교통편 및 장애아동이 특수교육 유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발달 서비스, 교정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뜻하며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의 조기 파악 및 평가도 포함됩니다. 관련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스피치-언어 병리학 및 청력 서비스
2. 통역 서비스
3. 심리적 서비스
4. 물리 치료 및 작업 치료
5.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6. 재활 상담을 포함한 카운슬링서비스
7. 방향정위와 보행교육 서비스
8. 교내 의료 서비스 및 교내 간호 서비스
9. 진단과 평가 만을 목적으로 한 의료 서비스
10. 사회복지 서비스
11. 부모 상담 및 부모 훈련

(20 U.S.C. 제 1402(26)항; 34 C.F.R.제 300.34 조; 교육법 제 56363 조.)

특수교육이란 각 장애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교육으로서 교실, 가정, 병원 및 기관 또는 기타 다른 환경에서 이행되는 교육 및 체육 지도를 포함하며 부모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20 U.S.C. 제 1402(29)항; 34 C.F.R. 제 300.39 조; 교육법 제 56031 조.)

교육기록의 열람권과 비밀 보장

교육구내 재학생의 모든 부모는 연방 가정의 교육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과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록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는 (권리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까지 포함) 주정부 준거법에 의해 자녀의 교육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통보를 교육구가 받지 않는 이상은 자녀의 교육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식별, 평가, 교육적 배치 및 FAPE의 제공에 관련한 모든 교육기록의 점검 및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또한 교육 기록의 해석과 설명을 불필요한 지연없이 아동의 IEP 관련 미팅 전이나, 합의 미팅 혹은 적법절차 공청회 이전에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의 사본을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FERPA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기록 점검 및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원이 임명한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맡을 법적관리자가 있지 않는 이상 학생이 열 여덟(18 번째 생일)세가 되는 날 학생 본인에게 양도됩니다.

교육기록은 귀 자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록으로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구, 에이전시 및 교육구 업무 대행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이며, 혹은 그러한 정보가 수집된 정보 출처의 기록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 및 주법은 교육기록이나 학생 기록이란 디렉토리(명부)를 제외한 교육구가 보관하는 수기, 인쇄물, 컴퓨터 미디어, 영상 또는 녹음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기타 형식 등의 학생을 식별 가능케 하는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기록이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본인의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록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FERPA에 따라, 교육구는 IDEA 아래 수집, 관리 및 사용되는 교육기록을 열람하는 교육구 직원이 아닌 모든 당사자들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는 수집, 보관, 공개 및 파쇄 각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반드시 기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이는 IDEA와 FERPA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훈련과 지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각 교육구는 개인 식별 정보의 열람권이 있는 직원들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된 최신 명단을 반드시 보관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IDEA 에 따른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 보관 또는 사용이 귀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2 제공하는데 있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교육구는 이를 반드시 부모에게 통보해야
3 합니다. 교육구로부터 더 이상 그러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부모는 그
4 기록의 파기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파쇄나 더 이상 개인 식별이 불가능
5 하도록 기록에서 개인 식별자를 삭제하는 식으로 이행됩니다. 그러나 각 교육구는 각
6 학생에 대한 영구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8
9 개인 식별 정보의 예로는 (1) 아동의 성명,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의 성명 (2)
10 아동의 주소 (3) 아동의 사회 보장 번호, 학생 번호, 법원 사건 번호 또는 생체인식 기록과
11 같은 개인 식별자 (4) 아동의 생년월일, 출생지 또는 모친의 결혼 전의 성과 같은 기타 간접
12 식별자 (5) 식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만한 아동의 인적 특성이나 기타 정보가 적힌
13 목록입니다. 교육구 직원 이외 다른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 FERPA 에
14 따라 부모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15
16
17 각 학교 현장의 기록 관리인은 교장입니다. 교육구의 기록 관리인은 학생 및
18 커뮤니티 서비스과(Student and Community Service Department)입니다. 학생 기록부는
19 해당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에 보관될 수 있으나 기록부에 대한 요청서가 한 장소를
20 대상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모든 장소에 있는 기록에 대한 요청으로 처리됩니다. 기록부의
21 관리인은 학생 기록부의 종류와 보관장소 명단을 (요청 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본인
22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사본은 교육구의 특수교육부장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3
24
25 부모의 신청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후 평일 5 일 이내 교육 기록의
26 검토와/또는 사본이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검색과 회수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27 복사비는 각 지역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비용 때문에 사본 수량에 대한 권리를
28 부모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청구됩니다. 기록의 완본이
29 한번 제공된 후에는 같은 기록의 추가 사본에 대한 복사비가 청구됩니다.

1 만약 교육구에서 수집, 관리 및 사용했던 교육기록 내 정보가 부정확하고 허위
2 사실이거나 자녀의 사생활 및 기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교육구로
3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서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가 귀하의
4 요청에 수긍한다면 요청을 받은 후 적절한 시간내 그 기록은 수정될 것이며 귀하께 통보를
5 드릴 것입니다. 만약 교육구가 정보 수정을 거부할 시, 의의 제기가 된 정보가 실제로
6 비정확하고 허위사실이며 귀 자녀의 사생활 및 기타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을 받는
7 공청회를 가질 권리에 대해 교육구가 통보 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청회를
8 신청하신다면 교육구는 이를 적절한 시간내 실시할 것이며 반드시 FERPA의 공청회에
9 대한 절차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12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구가 기록 수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귀하는 수정
13 성명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의의가 제기된 기록부분에 영구히 첨부되어 다른
14 당사자에게 동일 기록이 공개될 시 함께 제공됩니다. 귀하의 열람권 및 교육 기록
15 의의제기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모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육구 연례 통보”를
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20 U.S.C. 제 1232(g)항; 34 C.F.R. 제 99.1-99.67 조; 34 C.F.R. 제 300.610-300.625,
20 300.613 조; 교육법 제 48980, 49060-49079 조; 교육법 제 56041.5, 56043(n)조 및 56504; 5
21 CCR 제 432(b)(1)항.)

24 사전 서면 통보

25 교육구가 귀 자녀에 대한 식별, 평가, 교육 배정 및 FAPE의 제공의 개시 또는
26 변경을 제안하거나 혹은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27 승인을 부모님이 서면으로 해지할 경우, 교육구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28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IDEA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통보는 적당한 시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모국어나
2 귀하가 사용하시는 기타 소통방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3

4 서면 통보에는 다음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5 1.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에 대한 상세사항
- 6 2. 교육구가 왜 이러한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지에 대한 설명
- 7 3. 조치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시 근거가 된 각 평가 절차, 검사, 기록 또는
8 보고서의 상세사항
- 9 4. IEP 팀이 고려했던 기타 다른 선택사항과 이에 대한 거부 사유
- 10 5. 교육구의 제안 및 거부 결정에 연관성 있는 기타 요소에 대한 서술
- 11 6. IDEA의 절차적 안전장치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가 받는 보호에 대한 서술,
12 그리고 본 통보가 평가를 요청하는 첫 의뢰일 경우가 아닌 경우 절차적
13 안전장치 상세사항의 사본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
14 7. 이 부분의 조항들을 부모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연락처

15 (20 U.S.C. 제 1415(c)항; 34 C.F.R. 제 300.503 및 300.300(b)(4)항; 교육법 제 56500.4 조.)
16
17

18 **고지에 입각한 부모의 동의**

19
20
21 귀 자녀의 장애아동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최초 평가가 착수되기 전에 교육구가
22 고지에 입각한 귀하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IDEA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에 입각한
23 동의란 귀하가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귀하의 소통방식으로 동의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24 충분히 받았으며, 자녀에 대한 평가나 교육 배치 결정과 같은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25 활동의 이행을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26
27

28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를
29 철회/해지하는 경우 이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동의를 받은 시점부터 동의가
30 해지되기 전 사이에 이행된 조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31

1 최초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배치와 수혜에 대한
2 동의를 시사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3 귀하의 동의를 별도로 추후 요청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귀하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4 고지에 입각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요청에 귀하의 회신을
5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구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8 만약 귀하가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에 대한 요청에
9 회신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적법절차를 이용하여 최초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0
11 만약 귀하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개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교육구는
12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법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13 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14
15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 후 어느 시점이든 지, 귀하가 과거에
16 동의하여 제공되어 왔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해지하면,
17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귀하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해야
18 하며 적법절차를 통해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9 귀하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최초 제공된 이후 귀하가 서면 동의 해지를
20 제출하면 교육구는 귀하 자녀 관련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자 언급을 없애기 위해
21 귀하 자녀의 교육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22
23
24 만약 귀하가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서면으로 동의하지만
25 IEP의 모든 요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연이 없도록
26 하기 위해 귀하가 동의한 부분 만 이행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 자녀에게 무상의 적절한
27 공립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제안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요소 중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은
28 부분이 필수 사항이라고 교육구가 판단하면 교육구는 반드시 적법절차 공청회 요청을
29

1 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공청회가 열린 경우, 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2 공청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집니다.
3

4 재평가의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5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그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귀하의 동의 없이 교육구는
6 재평가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7

8 (20 U.S.C. 제 1414(a)(1)(D), 1414(c) 및 1415 조; 34 C.F.R. 제 300.9, 300.300, 300.514
9 및 300.516 조; 교육법 제 56021.1, 56321(c) 와 (d), 56346, 56381(f) 와 56506(e)항.)
10

11 부모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교육구가 동의를 받기 위해 부모의 행방을 알 수
12 없으면 교육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지명되도록 해야
13 합니다. 법원 임명 교육대리인이 없는 피부양자나 피보호자 신분의 아동 또는 보호자가
14 없는 노숙자 청소년을 위해서도 대리 부모는 지명될 수 있습니다.
15

16 (20 U.S.C. 제 1415(b)(2)항; 34 C.F.R. 제 300.519 조; 교육법 제 56050 조; CA 법원 규율 제
17 5.650 조.)
18

19 평가 절차 중의 보호

20 연방법은 “평가(evaluation)”, 캘리포니아법은 “평가(assessment)”라 칭합니다.
21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교육구 직원에 의해, 그리고 본 통보 내에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22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귀하의 서면 요청을 포함한 특수교육 의뢰가 접수된 후 십 오(15)일
23 이내에 교육구는 평가 계획서 또는 사전 서면 통보를 귀하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24 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교육구가 서면 평가를 실시하는데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25 귀하에게 최소 십 오(15)일 주어집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평가 계획서는
26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소통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며 그 계획서에는 실시될 모든 종류의
27 평가, 귀하의 동의 없이는 평가를 토대로 그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을
28
29
30
31

1 것이라는 고지, 이용 가능한 독립적 평가와 부모가 원하는 고려대상 평가 정보를 포함하여
2
3 최근 실시된 모든 평가 상세 내용, 그리고 자녀의 주 언어 및 주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가
4
5 포함됩니다. 부모는 장애가 의심되는 추가 영역에 대한 평가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에
6
7 대한 귀하의 서면 동의가 접수된 후 60 일 이내 교육구는 평가를 완료하고 귀하 자녀의
8
9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는 IEP 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휴일 또는 방학기간, 부모가
10
11 자녀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나 귀하 자녀가 다른 교육구로 전학하게
12
13 되는 경우, 또는 귀하와 해당 교육구가 평가 완료 시기에 대한 특정 스케줄에 동의를 할 때
14
15 상기 기간은 연장됩니다.

16
17 IDEA 는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구가 다음을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18 1. 대상 아동이 실제 장애아동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연관성 있는 기능적
19 정보, 발달 정보, 학습정보 및 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20 여러가지 평가 방법과 전략을 이용하고, 일반 교과 과정에 아동의 참여와
21 진전을 위해 또는 대상 아동이 프리스쿨인 경우 적합한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22 하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IEP 내용을 활용한다.
- 23 2. 대상 아동의 장애아동 여부 결정이나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24 결정할 시, 단 하나의 절차를 단독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5 3. 기법상 견실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또는 발달요인 외에도 인지과
26
27 행동요인의 연관있는 기여도를 평가한다.

28
29 교육구는 귀하 자녀의 평가에 사용되는 검사나 기타 평가 자료가 반드시 인종, 문화
30
31 및 성차별 없이 채택되고 사용되도록 하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모국어 또는
기타 소통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표준화된 모든

1 검사는 시행되는 특정 취지가 입증되어야 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숙련된 직원에 의해
2 검사 개발자가 제공한 시행방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귀하 자녀는 의심되는 모든 장애에
3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교육구는 귀하 자녀의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4 도움이 될 연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평가
5 시행이 완료되면, 부모와 IEP 팀의 구성원인 유자격 전문가들은 함께 그 아동이
6 장애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는 평가서 사본과 문서화된 자격 판정서를
7 제공받게 됩니다.
8

9
10 자격 여부 판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된 영어 실력, 읽기 및 산수 교육 미달을 이유로
11 귀 자녀가 장애아동 판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12

13 이 조항아래 시행되는 재평가나 초기 평가의 일부로 (적절할 시) IEP 팀이나 기타
14 유자격 전문가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15

- 16 1. 귀하가 제공한 정보와 평가, 현재 교실 환경 기반 평가와 관찰 사항 및 교사
17 관찰사항을 포함한 귀 자녀에 대한 기존 평가 자료의 검토
18
- 19 2. 상기 검토와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을 판정하는데 어떠한 추가
20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
21 a. 특별한 장애가 아동에게 있는지. 대상 아동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22 경우에는 동일한 장애 및 교육적 필요/요구가 계속 있는지에 대한
23 여부
24 b. 아동의 현재 수행 능력 수준과 발달 관련적 필요/요구
25
26
27
28
29
30
31

c.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 여부. 한 아동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지원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d. 적절할 시 일반 교과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IEP에 명시된 측정 가능한 연례 목표를 아동이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 여부

대개 삼(3)년에 한번 재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IEP 팀이 귀 자녀가 여전히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것을 판정하는데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교육구는 재평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한 사유를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신 후에 귀하는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평가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시, 교육구는 귀하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 자녀가 더 이상 장애아동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기 전, 교육구는 상기 기술된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20 U.S.C. 제 1414, 1415 조; 34 C.F.R. 제 300.301 – 300.306 조; 교육법 제 56320, 56321, 56329 및 56381 조; 5 CCR 제 3022 조.)

독립적 교육 평가

교육구가 평가를 완료한 후 귀하가 귀 자녀에 대한 교육구 측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견을 교육구에 통보하면 교육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독립적 교육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독립적 교육 평가 요청을 받은 후, 교육구는 독립적 교육 평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와 독립적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교육구의 기준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학교구가 진행했으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각 평가에 대해 공공 비용 지급 하에 독립적 교육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 (1 회) 입니다. 그러나, 만약 독립적 교육 평가의 필요성에 교육구가 동의하지 않을 시

1 적법절차 공청회를 반드시 요청하여 심문관 앞에서 교육구는 귀하의 독립적 교육 평가에
2 의의제기를 하고 교육구의 평가가 적합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3

4 교육구의 의의가 받아들여 지더라도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5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공 비용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비로 독립 교육 평가를
6 받기로 결정하신다면 교육구는 그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 교육 평가
7 시 교육구가 실시하는 평가에 적용되는 모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8
9

10 교육구가 평가의 일부로 귀 자녀를 교실 환경 내에서 관찰하게 되거나 교육구
11 절차가 교실내 관찰을 허용한다면, 이와 동일한 기회가 현재 실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12 교육적 배치 환경 내 독립적 교육평가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13

14 만약 귀하가 일방적으로 귀하 자녀를 비 공립학교에 배치시킨 후 그 비용에 대한
15 공공 비용 지원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된 배치와 그 제안된 배치 내에서 귀 자녀를 먼저
16 관찰해볼 기회가 반드시 교육구에 주어져야 합니다.
17

18 (20 U.S.C. 제 1415(b)(1)항; 34 C.F.R. 제 300.502 조; 교육법 제 56329 조.)
19
20

21 IEP 미팅

22
23 특수교육 수혜 학생의 부모는 IEP 팀의 일원이 되어 자녀에 대한 파악, 평가 및
24 교육적 배치와 연관된 모든 미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IEP 라는 용어 또는 개별화
25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 장애아동을 위해 연방 및 주법에 따라 개발, 검토, 개정된 서류를
26 의미합니다. IEP 는 아동의 현재 학습 성취 수준과 기능적 수행 능력을 기술하며 귀 자녀의
27 교육을 향상하는데 부모가 중시하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적
28 배치와 관련된 여러 결정을 하는 모든 모임/그룹에 일원이 될 권리가 부모인 귀하에게
29 주어집니다. 귀 자녀에 대한 정보나 특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IEP 미팅에
30 참가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교육구는 IEP 의 사본을 귀하의 사용 주언어로
31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아동의 나이가 세 살에서 다섯 살인 경우, 부모와 교육구의 동의 아래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플랜(IFSP)으로 IEP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만 16세에 첫 효력이 발생하는 IEP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진학 서비스의 서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후부터 매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16세 혹은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 시 그 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훈련, 교육, 취업 및 독립적 생활 기술과 연관된 적절하고 측정가능한 중등과정 후의 목표, 아동에게 필요한 진학 서비스 서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간 책무 혹은 연결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성년의 나이가 되면 양도받게 되는 권리에 대해 고지를 받았다는 서술내용이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 최소 일년 전부터 IEP에 포함되기 시작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부모가 법원 절차를 밟아 아동에 대한 보호권이나 후견인 지위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대상 아동이 열 여덟(18)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본인 교육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 자녀를 위한 IEP 개발에 있어, IEP 팀은 자녀의 행동이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과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자녀의 행동을 다루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과 지원을 포함한 전략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규 교사는 IEP 팀의 일원으로서, 적절하고 긍정적인 행동 중재 전략에 대한 결정 및 추가적인 에이전시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교직원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아동의 IEP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아동이 연간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IEP 팀이 검토하게 되며, 또 적절하다면 (1) 일반 교육과정 및 연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대되는 진전도가 부진한 경우 (2) 실행된 재평가 결과를 다루기 위해 (3) 부모가 자녀 관련 제공한 정보 및 (4) 아동의 예측되는 필요 등을 필요에 따라 다루기 위해 수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특정 IEP 팀원의 교육과정 혹은 관련된 서비스를 수정 또는

1 검토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모와 학교는 그 해당 IEP 팀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2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와 학교가 IEP 팀 회의에 IEP 팀
3 전원 또는 일부의 불참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이며 해당 IEP 팀원의 영역이나
4 교육과정 혹은 관련된 서비스가 수정 또는 검토되는 회의라면 그 해당 팀원은 회의 전에
5 부모와 IEP 팀에게 IEP 개발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정부 법에 따르면,
6 부모는 IEP 팀원에게 24 시간 사전 통보를 하면 IEP 회의를 전자식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는
7 권한이 있습니다. 학년도를 위한 연간 IEP 회의 이후 부모와 학교는 연간 IEP를 수정하기
8 위한 IEP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현행
9 IEP를 정정 또는 수정하는 서류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12 (20 U.S.C. 제 1414(d)항; 34 C.F.R. 제 300.320-300.324 조; 교육법 제 56032, 56304, 56341,
13 56341.1, 56341.5, 56342.5 및 56345 조; 5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 3040 조)

16 적법절차가 계류 중인 동안의 배치 (“현 상태 유지”)

18 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아동의 파악이나 평가 또는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구와
19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그 적법절차가
20 계류 중인 동안 귀하의 자녀는 현재 배치된 학교에 있게 됩니다. 부모와 교육구가 자녀의
21 학교 배치에 동의하거나 교육구가 법정 명령 또는 심문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를
22 제외하고 귀하의 자녀는 그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배치된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23 됩니다.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경우,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부모의 동의 하에
24 귀하의 자녀는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이 일반적인 규정의 예외로는 정해진
25 시간 동안 교육구에서 자녀를 대안적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26 임시 대안적 교육 환경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논의됩니다.

29 (20 U.S.C. 제 1415(j)항; 34 C.F.R. 제 300.518 조; 교육법 제 56505(d)항)

임시 대안적 교육 환경

처벌 절차

학교 직원은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규칙을 어길 경우 (1)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 (2) 그 외 교육 기관에 배치하거나 (3) 학교 수업일 연속 10 일 이하의 정학 처분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되는 한도까지) 및 동일 학년도에 발생한 각각의 다른 비행 사건에 대해 학교 수업일 연속 10 일 이하의 추가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이 동일 학년도에 1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기 원한다면 직원은 학생 행동규칙 위반을 초래하는 행동이 아동에게 있는 장애의 발현 때문인지 반드시 판단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학교 직원은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절차로 아동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규칙 위반을 초래하는 행동이 아동에게 있는 장애의 발현인지 판단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구 및 부모 그리고 관련 IEP 팀원은 아동의 파일에 있는 IEP, 교사의 관찰에 따른 소견, 그 외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처벌 조치를 결정하기 전 학교 수업일 10 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만일 IEP 팀이 그 행동이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고 결정할 경우 IEP 팀은 아동에 대해 기능적 행동 평가를 하거나 행동 중재 계획을 실행해야 하고 또는 현행 중인 행동 중재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1) 아동이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나 활동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하는 경우 (2) 아동이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나 활동에서 불법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나 판매 권유를 하는 경우 (3) 아동이 학교나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행사나 활동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끼칠 경우에는 학생 행동규칙 위반을 초래하는 행동이 아동의 장애 발현인 것과 상관없이 학교 일수 최고 45 일 동안 대안적 교육기관에 귀하의 자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 아동이 현재 배치된 곳에서부터 옮겨져서 동 학년도 내에 학교 수업일 10 일 동안 다른 곳으로 배치된 이후 그 기간 다른 곳에 있을 때도 교육구는 IEP 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자녀가 일반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아동은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다루기 위한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수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늦어도 아동에 대해 처벌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짜까지 그 결정 및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해 반드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아동의 배치 또는 장애로 인한 발현 행동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신청일로부터 학교 수업일 20 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적법절차 청문회가 계류 중인 동안 아동은 심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혹은 학교 수업일 45 일 동안 대안적 교육 기관에 다니게 됩니다. 단 부모와 교육구가 전술 내용과 다르게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일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가 현재 배치된 곳에 돌아가는 것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교육구는 긴급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관은 아동을 현재 배치된 곳에 유지하는 것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때 45 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적절한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0 U.S.C. 제 1415(k)항; 34 C.F.R 제 300.530 조; 교육법 제 48915.5 조)

**부모에 의해
사립학교에 등록된 장애 아동**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1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을 제공했음에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2 아동을 사립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할 경우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3 없습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사립학교 비용을 교육구로부터 변제 받기
4 위해서는 부모는 교육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도해야 하며 교육구가 자신의 아동을 위한
5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만일, 1)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6 전학시키기 전에 부모가 참석했던 가장 마지막 IEP 회의에서 자신의 아동에게 적절한
7 무료 공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가 제안한 배치를 거절했다는 사실 및 부모의 염려
8 사항과 자신의 아동을 공공의 비용을 들여 사립학교에 등록을 시키겠다는 의도를 IEP
9 팀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2) 자신의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전 최소 근무일
10 10 일 전에 교육구가 제안하는 배치에 대한 부모의 염려 사항 및 공공의 비용을 들여
11 사립학교에 등록을 시키겠다는 의도를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12 교육구는 변제를 부인하거나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19 부모가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전에 교육구가 부모에게 아동을
20 평가하기를 원하고 그 평가 목적을 알려준다면 부모는 자녀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1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요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 또는 심문관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22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전학시켜서 사립학교에 등록한 것이 지나친 행위였다고 판정할
23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다음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판사 또는 심문관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24 판사 또는 심문관은 변제를 거절하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1) 부모가 글을 읽지
25 못하며 영어로 쓰기를 못하는 경우 또는 2) 교육구의 배치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26 정서적으로 심각한 해를 줄 수도 있는 경우.

29 (20 U.S.C. 제 1412(a)(10)(C)항; 34 C.F.R. 제 300.148 조; 교육법 제 56175-56177 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전화: 1-800-926-0648

팩스: (916) 327-3704

이메일: speceducation@cde.ca.gov

<https://www.cde.ca.gov/sp/se/qa/cmplntproc.asp>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Seattle Office

915 Second Avenue Room 3310

Seattle, Washington 98174-1099

전화: (206) 607-1600

팩스: (206) 607-1601

TDD: (800) 877-8339

이메일: OCR.Seattle@ed.gov

<https://www.ed.gov/about/ed-offices/ocr>

교육구는 부모가 교육구에 항의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일 내에 부모를 만나서 항의 내용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항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절차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항의 양식은 교육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 U.S.C. 제 1415(b)(6)항; 34 C.F.R. 제 300.153 조; 교육법 제 56500.2 조; 5 CCR 제 3201 조 및 4600 조)

B. 중재 및 적법절차 청문회 절차

IDEA 에 준하여 아동의 파악, 평가, 학교 배치 또는 FAPE 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재 및 공평한 적법절차 청문회와 같은 절차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부모 또는 교육구는 중재만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중재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시 아동의 이름 및 주소, 생년월일, 학년, 아동의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부모에 대한 정보, 중재의 당사자들,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3 문제의 본질, 문제에 대한 제안 해결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CDE 는 중재 또는
4 적법절차 청문회 신청서 제출을 돕기 위해 표준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그 양식은 아래
5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

7
8
9 귀하는 중재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 항의서를 교육구에 송달해야 하며 아래 주소의
10 행정부 청문회 사무실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12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13 Attn: Special Education Division
14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15 Sacramento, CA 95833

16 전화: (916) 263-0880

17 팩스: (916) 376-4207

18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

19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20 중재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만 요청하는 경우는 적법절차 청문회 없이 중재만
21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비적대적인 방법의 비공식적 절차입니다. 중재만 요청한 경우
22 부모와 교육구는 시간 날짜 중재 장소 및 이 사건에 선임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정한
23 중재인의 이름 주소 전화가 적힌 중재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중재는 행정부 청문회
24 사무실에서 요청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중재에
25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교육구는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동반할 수는
26 있습니다. 중재에서 부모나 교육구가 발언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며 적법절차 청문회
27 또는 법정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에서 이루어진 합의 또는 동의 내용은
28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교육구에
29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30
31

1 절차 또한 적법절차 청문회만큼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ADR 및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2 자발적 방법입니다. 만일 ADR 및 중재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법절차
3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기 전에 항상 중재 또는 ADR 이
4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6 적법절차 청문회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부모와 교육구는 분쟁이 된 특별 교육
7 쟁점과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인, 증거 서류, 구두 변론 및 서면 변론을
8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서
9 든지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교육구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제기하게 된
10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행동을 알게 된 날짜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11 적법절차 청문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신청이 접수되면
12 부모와 교육구는 행정적 청문회 사무실로부터 청문회 시각 날짜 장소 등이 명시된
13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부모의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14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청문회에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15
16
17
18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가 있기 전에, 교육구는 귀하의 적법절차 청문회 신청서를
19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모 및 항의서에 제기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알고
20 있는 IEP 팀의 관련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합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합의회에서는
21 부모의 항의 및 항의를 하게 된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구가
22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합의회에는 교육구를 대신하여 결정권을
23 가진 교육구 대표가 참석하되 교육구의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가
24 변호사와 대동하는 경우에는 교육구 변호사도 참석 가능합니다. 합의회와 관련한 변호사
25 비용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교육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부모도 의무적으로 합의회에
26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제기된 문제가 의무적인 합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27 당사자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항의서를 받은
28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모가 만족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적법절차 청문회로
29 진행이 되고 청문회에 적용되는 모든 시한이 시작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는 부모의 적법절차 청문회 항의서에 제기된 쟁점에만 국한됩니다. 공정한 심문관이 적법절차 청문회를 주재합니다. 부모는 변호사 및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 혹은 훈련을 받은 개인을 동반하고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와 서면 및 구두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증인의 참석을 요구하고 대면,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된 서면 또는 전자 상의 청문회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에 대한 결정 및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집니다.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부모와 교육구는 청문회에서 결정해야 할 쟁점 및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추구하는 해결점, 변호사가 대변할 것인지 등을 서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5 일 전에 부모와 교육구는 참석하게 될 모든 증인 및 완료된 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청문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물을 서로에게 개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 증거 혹은 평가 보고서 등은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문관의 판결은 그 부모의 자녀가 FAPE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에 근거한 실질적인 근거에 대해 판정해야 합니다. 심문관은 행정부 청문회 사무실 혹은 주 교육부(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Education)가 청문회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안에 최종 판결을 하고 판결문 사본을 부모와 교육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이유로 인해 연기가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적법절차 청문회의 판결은 최종적이지만 청문회 관련 당사자가 그 적법절차 청문회의 결정 및 판결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U.S.C. 제 1415(b)(7)(a)–1415(j)항; 34 C.F.R. 제 300.506–300.518 조; 교육법 제 56500.3 조, 56502–56507 조; 5 CCR 제 3082 조)

민사 소송

1 부모 또는 교육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심문관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항소는 심문관의 판결일로부터 90 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적 청문회의 녹음과
3 기록을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증언을
4 들을 수도 있고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 소송의 소장은 연방
5 지방법원 또는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20 U.S.C. 제 1415(i)항; 34 C.F.R. 제 300.514 조, 300.516 조; 교육법 제 56505(k)항.)

10 변호사비

11 미연방 지방법원 또는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은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민사
12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한 경우 합리적인 액수의 변호사비 지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13 가지고 있고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하찮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항의 또는 추가
14 제소를 한 경우 혹은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소송 경비를 불필요하게
15 증가시키기 위해 항의 또는 추가 제소를 한 경우에는 교육구에 합리적인 액수의 변호사비
16 지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판정되는 변호사비는 그 소송이나
17 절차가 있었던 지역사회에서 통상되는 일반적인 변호비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청문회
18 예정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교육구가 부모에게 서면상의 합의 제의가 있었고 이후
19 판사나 청문회 심문관이 귀하에게 궁극적으로 판결한 구제액이 합의 제안 액수보다 더
20 많지 않을 때는 변호사비가 지급 판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합의 제의를
21 거절할 만한 상당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교육구가 그 절차를 지나치게 지연한
22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26 부모가 분쟁의 최종 해결을 지나치게 지연하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이지
27 않을 경우 변호사비 및 관련 경비를 지급 판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28 변호사가 합의회 또는 IEP 팀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및 관련 경비를
29 지급 판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IEP 팀 회의가 행정적 절차 또는 사법적 소송의
30 결과로 소집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 U.S.C. 제 1415(i)(3)항; 34 C.F.R. 제 300.517 조; 교육법 제 56507(b)항)

주립 특수학교

CDE 가 운영하는 주립 특수학교는 프레몬트와 리버사이드에 각각 위치한 캘리포니아 청각 장애인 학교와 프레몬트에 위치한 시각 장애인 학교로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상실, 시각 장애, 혹은 청각-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곳의 주립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는 영아부터 21 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주립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는 5 세부터 21 세의 학생들에게 기숙 학교 및 통학 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주립 특수학교는 또한 평가 서비스 및 기술 보조를 지원합니다. 주립 특수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ca.gov/sp/ss/>를 참조하거나 자녀의 IEP 팀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제 56321.6.항)

공공 혜택이나 보험 사용과 관련한 권리의 통보

이 통보는 귀하의 자녀가 IDEA 에 준하여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법정 후견인, 대리 부모 혹은 법정이 지정한 교육권리자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IDEA 의 요건에 따르면 교육구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자녀의 공공 혜택 (예, 메디칼) 또는 보험을 사용하기 원할 때 귀하의 권리와 보호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을 처음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이후 일년에 한번씩 귀하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의 공공 혜택 혹은 보험 제도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IDEA 에 따른 아동의 FAPE 수혜를 위해 부모가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 혹은 등록을 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구는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나 사용자 부담금(co-pay)과 같은 본인 부담금을 부모가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아동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을 사용함으로써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유용 가능한 일생 보장이 줄어들거나 그 외 보험 혜택이 줄어들 경우 (2) 부모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제도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자녀가 방과 후에도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3) 보험료가 늘거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이 중단되게 하는 경우 (4) 부모의 총 건강 관련 지출비에 근거한 가족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면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34 CFR 제 300.154(d)(1)(2)(i)-(v) 및 (e); 교육법 제 56363.5 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귀하는 교육구가 IEP 혹은 평가 보고서와 같은 자녀의 개인식별정보가 들어있는 교육 기록을 메디칼 또는 그 외 공공 혜택 및 보험 제도에 지급 청구 목적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동의서를 교육구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기밀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연방 법전 소제 20, 제 1232 (g)항, 미국 연방 규정집 소제 34 제 99 장) 및 IDEA (미국 연방 법전 소제 20, 제 1400 조, 미국 연방 규정집 소제 34 제 300 장)에 따라 자녀의 개인식별정보를 메디칼 또는 그 외 공공 혜택 및 보험 제도에 지급 청구 목적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동의서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자녀의 개인식별정보를 메디칼 또는 그 외 공공 혜택 및 보험 제도에 지급 청구 목적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이 교육구는 부모나 자녀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자녀의 개인식별정보를 메디칼 또는 그 외 공공 혜택 및 보험 제도에 지급 청구 목적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계속해서 무료로 FAP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메디칼 또는 그 외 공공 혜택 및 보험 제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급 청구 목적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동의서를 부모가 철회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교육구는 모든 필요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